



제337회 임시회

2015.01.28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15년 01월 19일

○ 회부일자: 2015년 01월 20일

3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를 삭제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한시기구 중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이 도래한 방과후학교지원단을 삭제함(안 제6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방과후학교지원단은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¹⁾하여 운영하였으나 존속기한(2015. 2. 28.까지)이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(2012. 12. 12.) 의결, 2012. 12. 28. 시행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5조(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)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·독자성·계속성
2.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
3.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
4.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
5. 통솔 범위,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
6. 사무의 위탁 가능성

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② 분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.
-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